

의안번호	2213650
의 퇴 인	백혜련의원
회 답 일	2025.11.6.
추 계 번호	25D563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각각 12명 증원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을 2명 순증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5억 4,600만원, 2031년 49억 6,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2억 4,100만원(연평균 38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 증원 (안 제4조)	1,542	3,116	4,767	4,840	4,959	19,224	3,84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안 제41조의2)	4	4	4	4	1	17	3
추가재정소요	1,546	3,120	4,771	4,844	4,960	19,241	3,847

주: 본 추계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 등 추계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대법관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법정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제2항(대법관) 및 부칙 제1조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함 - 공포 후 1년, 2년, 3년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4명씩 증원함(안 부칙)	의무규정
2	안 제7조 (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의 2분의 1로 구성되는 제1연합부와 제2연합부를 둠(제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각 연합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됨(제3항)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대법원장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의3 (전국법관대표회의)	관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둠(제1항)	의무규정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여 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2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제3항) 1. 사법행정 또는 법관독립에 관하여 의견 표명할 사항 2.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사법행정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에 건의할 사항 3.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의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4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의 위원 중 법관 3명과 변호사 2명의 추천 절차를 다양화함	의무규정
5	안 제41조의2제2항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의 위원정수를 12명으로 2명 증원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 2명을 순증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제2항(대법관) 및 부칙 제1조	○	-
2	안 제7조 (심판권의 행사)	×	대법관이 증원되어 전원합의체의 인원이 13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하고, 각 12명으로 구성되는 연합부 2개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 시설비 또는 공사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시점에서 그 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안 제9조의3 (전국법관대표회의)	- (미대상)	대법원규칙(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규칙)에 규정된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이고, 현행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 (미대상)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외부위원 수(8명)는 현행과 동일함
5	안 제41조의2제2항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법관 증원(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 순증(2명)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대법관 증원(14명→26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법원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로 구분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는 「법원조직법」 제23조¹⁾에 따라 대법관의 증원과 함께 대법관 비서관도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법률에서 그 수를 직접 명시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대법원에 따르면, 각 대법관비서실에는 4명의 비서인력(운전 1명 제외)이 근무함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이 증원되는 경우 대법관 1명당 처리사건이 축소(3,305건→1,653건)될 것으로 예상되고²⁾, 각 대법관비서실의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어, 현시점에서 각 대법관비서실 축소 조정 및 인력재배치 후 비서인력의 순증 인원을 예측하기 곤란함
 - 재판연구관의 정원은 총 134명(판사 102명, 임기제공무원 32명)인데,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연구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시점에서 재판연구관 등의 증원 여부, 증원 또는 재배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본 추계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외부위원 순증(2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순증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41조의2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위원정수 12명, 법관 3명, 외부위원 9명(순증 2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법원조직법」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대법관 증원 시 1인당 사건처리건수(출처: 2024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재구성)

사건 처리건수	현행		대법관 증원 시	
	가동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가동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39,662건 (2023년 기준)	12명	3,305건	24명	1,653건

- 現 대법관의 임기와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을 고려할 때,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횟수(회의횟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2]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횟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회)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후보추천 위원회	대법관	임기만료	2	1	2	5	1
		증원	4	4	4	—	—
		소개	6	5	6	5	1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와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회의참석수당은 대법원의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³⁾과 그동안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회의 참석 1회당 350,000원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⁴⁾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3)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3.559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2.0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5,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실제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은 2027년, 2028년, 2029년 3년간 각각 4명씩 충원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 증원(안 제4조제2항 및 현행법 제23조)

1) 인건비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인건비는 증원인원(대법관 12명, 비서관 12명)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증원인원에 직급별 1인당 보수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2025년 기준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급별 연봉액: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대법관	대법관비서관(4급) ¹⁾
봉급	111,522	72,407
관리업무수당	10,037	6,517
정액급식비	1,680	1,680
직급보조비	19,800	4,800
명절휴가비	11,152	7,241
정근수당	9,294	6,034
정근수당 가산금	-	1,560
재판수당	4,800	-
성과급(A등급)	-	7,087
합계	168,285	107,326

주: 1) 법원공무원 4급 평균 호봉(24호봉)을 적용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법관	보수	706	1,446	2,220	2,274	2,328	8,974
	기관부담금	93	191	295	304	314	1,197
	소계	799	1,637	2,515	2,578	1,642	10,171
비서관	보수	450	922	1,416	1,450	1,485	5,723
	기관부담금	59	122	188	194	200	763
	소계	509	1,044	1,604	1,644	1,685	6,486
합계		1,308	2,680	4,120	4,222	4,327	16,6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 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5]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액	대법관	706	1,446	2,220	2,274	2,328	—
	비서관	450	922	1,416	1,450	1,485	—
	소계	1,156	2,368	3,636	3,724	3,813	—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75	153	235	241	247	9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개정안에 따른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신규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증원 인원	대법관	4	4	4	—	—	—
	비서관	4	4	4	—	—	—
	소계	8	8	8	—	—	—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5,080	5,182	5,285	—	—	—
자산취득비		41	41	42	—	—	1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차량 임차료

- 차량 임차료는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 인원 2024년 기준 차량 임차료 단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법관(13명)의 임차료는 363,052천원이며, 차량 1대당 임차료 단가는 27,927천원임

[표 7] 개정안에 따른 차량 임차료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증원 인원	신규	4	4	4	—	—	—
	누적	4	8	12	12	12	—
차량 임차료 단가		29.6	30.2	30.8	31.4	32.0	—
차량 임차료		118	242	370	377	385	1,4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각각 12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5억 4,200만원, 2031년 49억 5,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2억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 증원 (안 제4조)	인건비	1,308	2,680	4,120	4,222	4,327	16,657	3,331
	기본경비	75	153	235	241	247	951	190
	자산취득비	41	41	42	—	—	124	25
	차량 임차료	118	242	370	377	385	1,492	298
	합계	1,542	3,116	4,767	4,840	4,959	19,224	3,8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41조의2)

- 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 순증(2명)분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을 2명 순증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0만원, 2031년 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후보자추천 위원회 (안 제41조의2)	외부위원 순증	2	2	2	2	2	—	—
	회의횟수	6	5	6	5	1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소계	4	4	4	4	1	17	3

주 1. 회의횟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별로 각 1회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각각 12명 증원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을 2명 순증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5억 4,600만원, 2031년 49억 6,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2억 4,100만원(연평균 38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 증원 (안 제4조)	인건비	1,308	2,680	4,120	4,222	4,327	16,657	3,331
	기본경비	75	153	235	241	247	951	190
	자산취득비	41	41	42	—	—	124	25
	차량 임차료	118	242	370	377	385	1,492	298
	소계	1,542	3,116	4,767	4,840	4,959	19,224	3,844
대법관후보자추천 위원회 (안 제41조의2)	위원 순증분	2	2	2	2	2	—	—
	회의횟수	6	5	6	5	1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소계	4	4	4	4	1	17	3
합계		1,546	3,120	4,771	4,844	4,960	19,241	3,847

주: 본 추계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 등 추계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대법관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법정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횟수, 회의참석수당 등 대법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법률에서 그 수를 직접 규정한 인력(대법관, 대법관 비서관 등)만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인건비 등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